

한국경제의 금융화와 제도적 안정장치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I. 문제 제기

II. 김대중 시대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원시적 축적기

III. 노무현 정부의 공격적 금융화 노선

IV. 잠정적 보완책들

지난 9월 3일, 론스타는 자산규모로 영국 최대 은행인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자본’ 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복잡미묘’ 한 국민적, 국제적 논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 논전을 ‘복잡미묘’ 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금융자본을 대변하는, 유수한 해외 언론들은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이른바 한국의 ‘반 외자 정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어떤 잘못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전직 정부관료와 은행 임원들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9월 11일자)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검찰과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에서 아무런 불법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오보였기 때문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정보도까지 냈다. 한국 검찰은 오히려 매각과정에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론스타가 연루되었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¹⁾

1)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는 그 국적과 상관없이 4%를 초과해서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론스타는 법률적으로 비금융주력자(총자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강행되었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론스타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비금융회사의 비율이 자본총액의 25%를 상회하거나,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액이 2조원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나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외면했다. 둘째, 금융감독 당국 등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은 명분은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때문이었다. 그 예외조항의 내용은 비금융주력자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를 초과해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이 적용되려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BIS를 인위적으로 낮춰 보고하는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I. 문제 제기

한편 국내 여론은 이 사건과 관련,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의 전망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론스타의 인수자격 시비 및 외환은행 자산 저평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론의 바닥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바람직했는가”이다. 혹은 “외국자본의 ‘정상적인(!)’ 국내 기간산업 인수는 바람직한가”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해외 언론들의 ‘반 외자 정서’ 질타는 그들이 이 같은 심층적 여론을 읽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론스타 사태’가 한국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 노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1997년 말의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양상은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 인수를 점점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다. 즉, 그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외국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와 국내 자본의 해외 인수합병, 인수 기업의 매각에 따른 금융수익의 자유로운 처분(이른바 ‘먹튀’), 이를 위한 자본의 국경 간 이동 등을 더욱 쉽고 자유롭게 하는 조치가 시장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같은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부 당국과 언론이 유독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해외 언론들이 ‘반외자 정서’ ‘외자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을 거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하에서는 IMF 사태 이후 경제개혁의 주도자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어떤 노선을 추진해 왔는지 회고하고 이후의 전망을 추정해본 뒤 현 단계에서 그나마 개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 노선’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김대중 시대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원시적 축적기

적절하지 않은 서술 방법이지만, 지면 관계상, 필자는 ‘금융화’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하나의 시각을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되겠다.

‘금융화’란, ‘실물 경제’의 작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쳤던 금융 부문이 기업의 운영권을 장악하면서 실물적 생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화된 경제에서는, 실물 부문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금융이 산업 부문을 재구조화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배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존재 양태(소유지배구조)를 ‘금융적 이익의 추구’가 가능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금융화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환란 이후 IMF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개한 개혁의 핵심은 기업(과 은행)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기업 경영권 시장의 형성,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주식시장 자유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수단은 ‘부채비율 200%’(기업)과 ‘BIS 8%’(은행) 규제였다. 이렇게 기업과 은행이 결별하고 상품이 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와 사들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업·금융 개혁은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이 한국의 기업과 은행을 재료로 머니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경영권 시장을 개방한 조치였다. 한국의 경우 IMF 사태 이전엔 기업, 특히 국민경제와 고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은행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개혁은 신자유주의의 원시적 축적과정이다.

이 같은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IMF가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 바로 자본시장 개방이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지배 지분을 획득하려면 주식의 상당 부분을 공개매수도록 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까다롭게 만들던 장치(의무공개매수제)를 폐지하고, 국내 기업과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허용했다.(1998년 5월, 외국인투자촉진법²⁾) 같은 시기 외국인에 대한 주식한도가 폐지되었고, 2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정부가 사전에 허가하던 규정도 없앴다.³⁾ 또한 외국인들이 10% 이상 투자할 때 대상 기업 이사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그 결과, 해외자본은 국내 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외자본은 외환, 국민, 하나, 제일, 신한은행에서 1대(혹은 유일한) 주주이거나 50%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⁴⁾ 또한 삼성전자, SK텔레콤, LG화학, 포스코 등 국내 대표기업에 의미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경제의 ‘등뼈’라고 불릴 수 있는 산업들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이는 김대중 개혁의 부작용이 아니다. 오히려 목표였다고 봐야 한다. 국내 기업 및 금융 기관을 세계 (자본)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바로 기업의 투명성이다)은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은 인수합병되는 것이 당연하며 국가는 이런 과정을 오히려 촉진해야 한다는 ‘정언명법’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태 전개에 비춰보면, 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시중은행을 인수하고 5조여 원의 수익을 챙겨 ‘먹튀’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세계적 자본이동의 차원에서 볼 때 사모펀드의 역할은 (세계)총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수익성 낮은 기업(주식가치가 낮은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효율화(비핵심 부문 매각, 정리해고)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되판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수익성 낮은 기업 부문에 고착, ‘낭비’ 되고 있

2)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부동산임대, 도소매, 토지개발, 투자회사 등을 외국인 투자에 완전 개방.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조세 인센티브 부여, 인가 시스템 간소화.

3)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국내 채권 및 단기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

4) 2007년 상반기 현재, 주요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보면, 국민 84.8%, 신한 61.7%, 하나 81.0%, 외환 81.09%, 우리 10%, 제일 100%, 대구은행 65.7%, 부산은행 56.1%, 전북은행 28.1%, 기업은행 20.3% 등이다. 특히 한미은행과 제일은행은 상장도 폐지되었다.

는 자본을 그야말로 ‘해방’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와 기업,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모펀드가 창궐하는 경제, 혹은 자본의 효율성이 무한대로 추구되는 경제는 저성장과 경영불안, 고용 불안정으로 다가올 뿐이다.

이처럼, IMF 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은 ‘(세계)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내의 사회, 경제, 문화 부문을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전 한국 좌파들의 목적이 국가기구 장악을 통해 사회의 전 영역을 혁신하는 것이었다면, 1998년 이후 한국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추진되었다.

III. 노무현 정부의 공격적 금융화 노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공격적 금융화에 나선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금융화를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금융빅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자들이 ‘혁명적 금융개혁’ ‘제로베이스 개혁’ 등의 ‘급진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금융 빅뱅은 한마디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재편의 동력은, 이하에서 서술하겠지만, 아마 ‘재벌’이 될 것이다.

우선 금융 빅뱅의 양대 축이 될 제도들부터 살펴보자.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선 자통법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법률로 정한 상품만 출시 가능)’에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법률로 출시 불가하고 규정한 상품 이외의 모든 것이 출시 가능)’으로 완화했다. 저축 등의 은행상품에 대해 주식, CMA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상품의 매력과 잠재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이 자산을 은행 저축 보다 투자상품으로 보유하기를 정부 당국이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경쟁을 허용해서 주식·채권 인수 및 중개, 자산운용, 신탁, 인수합병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회사(종합금융그룹)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자통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FTA 금융부문 타결안의 핵심은 해외 금융기관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즉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에 ‘상업적 주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한국 내에 법인을 둔 해외 금융회사에는 어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 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국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엔 엄격하게 규제한다.”

다시 말해 해외 업체가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국내 법인으로 취급되어 어떤 투자상품도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자동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증권사가 지급결제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투자상품을 다루고 있는 은행과 지급결제권을 가진 증권사(투자회사)는 예전과 달리 매우 비슷한 업무영역을 가지게 된다. 즉, 금융장벽이 그만큼 무너진 것이다.

이 뿐 아니다. 보험업계도 ‘얌전히’ 있을 리 없다. 지급결제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현재로서는 은행만 가능하고, 자동법 실시 이후엔 증권사(금융투자사)에도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를 보험사에도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은행, 증권사–증권사, 보험사–보험사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금융업종 내 경쟁이 금융업종 간 경쟁으로 확대, 심화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장벽 철폐, 즉 금융 빅뱅이 미국, 영국, 일본, 호주를 찍고 한국으로 밀어 닦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증권사와 보험사에 지급결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로 재벌이 은행의 핵심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증권사나 보험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제도 하에서 금산분리는 이미 ‘완화’ 되어 있다. 금산분리 철폐는, 이미 금융산업의 3대 축 가운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이 은행업에까지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보험사 상장이 허용됨으로써, 재벌들은 적어도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다. 삼성그룹이 지난 2005년부터 ‘금산분리 관련 도상(圖上)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온 사실이 ‘폭로’ 된 것이다. YTN의 지난 8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책과 계획을 마련했다” 는 것이다.

또한 삼성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2005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가 본격 거론되도록 하고, 2007년에는 은행업무의 일부를 확보한 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자는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 계획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관철되었다.

다시 말해 ‘2005년 하반기 금산분리 과제의 본격 거론’은 때마침 이때부터 시작된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 보수언론 및 경제신문들의 관련 기사 게재,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 등으로 실현되었다. 정말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이다.

또한 ‘2007년 은행업무의 일부 확보’는 지난 7월 3일 자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은행업무의 일부’ 인 지급결제 기능이 삼성의 자회사인 금융그룹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자동법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 이른바 종합금융그룹에 은행까지 포함시키거나, 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은행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률 개

정'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금산분리 철폐 내지 완화이다.

금산분리 철폐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여부와 관련된 이슈만은 아니다. 금융 빅뱅과 재벌 그룹의 '지주회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산분리 철폐'는 한국의 고용창출에서 절대적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그룹, 결국 국민경제의 향방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삼성이 '금융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떨어질 때 '자본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IV. 잠정적 보완책들

지금까지 봤듯이, IMF 사태 이후 10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사태는 금융화의 심화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세계경제는 자본과 소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저개발 국민경제의 과제는 '외자유치' 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를 훔쓸고 있는 것은 과잉자본의 쓰나미이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한국 뿐 아니라 모든 선진 자본주의경제(advanced capitalist economy)에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완전히 새로운 변화인 만큼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금융화의 부작용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국한해서 해외(특히 미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서브 프라임 사태 등 외부 충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이 있다.

▲ **한국은행법 개정** : 현재 한국은행의 목적은 통화신용 정책에 제한되며, "불가안정 목표의 달성을 최선을 다해야 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앙은행에 "인플레나 잡으라" 고 강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기능을 금융자본의 최대 이해(불가안정)에 종속시키는 조치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에 실패해 부동산 파동이 초래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의 전반적 연관성 및 발전을 고려해서, 신용공급은 물론 국내 통화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화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및 징계권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은행법은 적어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수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 연방준비은행법 제2조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불가 안정' 과 함께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 최대 고용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 외환 인계철선(trip-wire) 제도 : 정부가 설정한 외환수지 관련 지표가 위협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시장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이다. 신규 외채를 제한하는 등 누진적 자본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인계철선 지표로는 ‘외화표시 부채와 국가 외환보유고 간의 비율’ ‘단기부채와 장기부채 간의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외환 세이프가드제 및 가변예치의무제의 실효화 : 이 두 제도는 이미 외환거래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혹은 ‘심각한 어려움’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인해 실제 사태 발생 시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히 사모펀드 등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에 대한 예외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진출이 늘면서 국내 기간산업·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M&A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창궐로 인한 피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 및 고용불안, 금융시장 교란 등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 수준의 기업·은행 소유 및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 ‘지나친’ 금융 이동성이 실물 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장치 :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 및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의 사전승인 규정을 명시하고, 승인되지 않은 인수합병의 경우 인수자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기간산업 및 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로 엑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포이즌 필’을 정관에 포함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5월, 포이즌 필, 황금주,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등을 도입하는 등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제도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 생산적 은행 소유지배구조법 제정 : 은행이 지난 사회적 역할을 감안, 은행을 국가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총량적 외국인 소유제한(예컨대 49%)을 설정할 수 있다. 이미 외국인 주주가 과반수 이상인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역진금지 조항을 채택, 소유제한선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외국인 지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박노영, 「외국계 TNC들의 소유구조와 지구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73호, 2007. 3)에 따르면, 미국 금융·비금융기업들의 미국 국적성은 80~9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은행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임원 중 한국 국적 소지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외국인 임원에 대해 ‘국내 1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부과하거나, 금융감독원이 해당 임원에 대해 ‘국내 금융권 및 경제 상황을 적절히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수 있다. 다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영국 등도 법률이나 행정지도로 내국인 이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은행 이사는 재직 중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 가운데 3분의 2는 취임 1년 전부터 은행이 소재한 주(州), 혹은 그 은행으로부터 100마일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그 은행이 외국은행에 합병되었거나 자회사인 경우에도 미국 시민이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 종업원 등 기업(은행) 관계자의 지분 소유 및 차등의결권 : 기업 전현직 노동자 등 관계인이 자사의 지분을 보유토록 하고 어떤 경우엔 이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 수익의 배분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충성도까지 제고할 수 있는 소유구조 안정화 방안으로 유럽 기업들 가운데서 채택되고 있다. 프랑스 3대 은행인 소시에떼 제네랄의 경우 전현직 직원들의 펀드인 피고용인 주식계획이 이 회사 자산의 7.4%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최대 주주이다. 더욱이 피고용인 주식계획의 의결권은 소유권의 2배 정도인 13.57%에 달하고 있다.(2005년 현재)

▲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익과세 혹은 사모펀드 규제법 : 투자기간(1~2년, 3~5년, 6~10년)에 따라, 그리고 투자 형태(경영권 획득,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본이익세율을 차등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예컨대 경영권을 획득한 대주주가 2년 이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자본이익에 대해 50% 이상 중과세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경우엔 대주주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투자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할 수 있다. 이는 사모펀드 등의 단기 투기인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투자엔 오히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은행이 사모펀드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 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모펀드가 자사의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법안이 존재한다.(2007/09/18)

